

용인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행정공무원의 복무 규정

제정 2000. 4. 20 훈령 제 88호
개정 2001. 12. 24 훈령 제125호
2005. 10. 5 훈령 제209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그 직무분야에 종사하는 용인시 행정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5. 10. 5]

제2조(직무범위)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그 직무분야에 종사하는 용인시 행정공무원(이하 “행정공무원”이라 한다)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5. 10. 5>

1. 용인시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지방공무원
2. 용인시에 근무하며 식품단속사무, 문화재의 보호사무, 공중위생단속사무, 환경관계단속사무, 차량운행제한 단속사무 및 도로시설 관리사무, 관광지도업무, 청소년보호업무, 농약 및 비료단속사무, 하천감시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지방공무원
3. 용인시에 근무하며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량검사 공무원
4. 용인시에 근무하며 「자연공원법」에 의한 공원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지방공무원
5. 용인시에 근무하며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단속사무 및 「대외무역법」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지방공무원
6. 용인시에 근무하며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내지 검역관으로 임명된 공무원

용인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행정공무원의 복무 규정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의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적용범위는 시장의 제청에 의하여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.

제4조(적용공무원의 복무)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정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타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.

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행정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경우 「사법경찰관 관리업무 규칙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건발생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5조(복장) ① 행정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의 효율성확보를 위해 별도의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.

② 이 경우 별도의 복장이라 함은 「청원경찰법 시행규칙」 제9조를 준용하되 별도 1 내지 별도 3과 별도 5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1. 12. 24 훈령 제125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05. 10. 5 훈령 제209호>

이 규정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